

“MMW-CMA 간편 가입서비스” 등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신규 지정 의결

-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,072건

금융위원회(위원장 이석원)는 4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. 이로써 현재까지 총 1,072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.

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(“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” : 참고)

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‘MMW-CMA* 간편 가입서비스’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하였다. MMW-CMA는 투자일임 계약에 해당하여 금융회사는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나,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일정 부가조건하에서 비대면 상호작용** 수단을 활용***하여 설명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.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인해 MMW-CMA를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증권회사 방문 또는 장시간의 영상통화 없이도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설명을 거쳐 MMW-CM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.

* MMW(Money Market Wrap) CMA :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일임받아 한국증권금융 예치금 등 자산에 투자하고, 그 수익을 매일 정산하여 일 복리 효과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식 금융상품

** 햅틱(진동), 애니메이션, 음성봇(주요내용 낭독), 판매직원 연결 등

*** 가입소요시간 단축 기대 : (대면 or 영상) 약 30분 소요 → (간편가입서비스) 15분 내외

또한, 키움증권과 하나카드가 공동으로 신청한 ‘키움증권과 하나카드의 연계를 통한 외화지급결제 및 활용서비스’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. 현행 외화선불전자지급수단은 주식 등 자산구매 목적에 사용이 불가하였으나,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고객은 하나카드의

외화선불전자지급수단을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여 해외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. 이에 따라 고객의 외화증권 투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되고 환전·재환전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.

더불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KB국민카드 외 7개사가 신청한 ‘신용카드회사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시 판매비중 규제 개선’ 서비스, 비금융플랫폼 등과 연계한 제휴 예·적금 계좌 개설 서비스 등 3건*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었다.

- * ① 십일번가 및 신한은행(11번가 전용적금)
- ② 롯데멤버스 및 전북은행(APP기반 제휴 통장 개설 간편화한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)
- ③ 삼성카드 및 우리은행(모니모 우리 통장 서비스)

한편 ‘24.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‘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’에 대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.

<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>

구 분	업체명	혁신금융서비스 지정
신규지정 (13건)	한국투자증권(1건)	- MMW CMA 간편 가입서비스
	키움증권 및 하나카드(1건)	- 증권사 위탁계좌·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연계 서비스
	KB국민카드 외 7개사*(8건) * KB국민카드, 롯데카드, 비씨카드, 삼성카드, 신한카드, 우리카드, 하나카드, 현대카드	- 신용카드회사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 시 판매비중 규제 개선
	십일번가 및 신한은행(1건)	- 11번가 전용 적금 서비스
	롯데멤버스 및 전북은행(1건)	- APP기반 제휴 통장 개설 간편화한 생활 금융 플랫폼 서비스
	삼성카드 및 우리은행(1건)	- 모니모 우리통장 서비스
지정기간 연장 (1건)	한국주택금융공사(1건)	-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선인 (02-2100-2530)
		담당자	서기관	송현지 (02-2100-2841)
<공동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신장수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혜인 (02-2100-2872)
<공동>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	최치연 (02-2100-2660)
		담당자	사무관	최미영 (02-2100-2673)
<공동>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이동엽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윤혜원 (02-2100-2967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권유이 (02-2100-2830)
		담당자	서기관	윤덕기 (02-2100-1690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문희 (02-2100-2630)
		담당자	사무관	윤송이 (02-2100-2524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서나운 (02-2100-26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하민 (02-2100-2622)
<공동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박진애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권진웅 (02-2100-2991)
<공동>	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	책임자	과 장	이희곤 (044-215-4750)
		담당자	사무관	류성열 (044-215-4753)
<공동>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	책임자	국 장	이 석 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임은정 (02-3145-7545)
		담당자	팀 장	지행호 (02-3145-7135)
<공동>	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	책임자	국 장	유석호 (02-3145-6700)
		담당자	팀 장	유승동 (02-3145-6540)
<공동>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조영범 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김진형 (02-3145-7440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정은정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이종진 (02-3145-8022)
<공동>	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	책임자	국 장	노영후 (02-3145-5700)
		담당자	팀 장	김세훈 (02-3145-5690)
<공동>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권홍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박원규 (02-3145-7474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	책임자	국 장	황준하 (02-3145-8350)
		담당자	팀 장	이훈아 (02-3145-8352)

<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[13건] >**①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MMW CMA 간편 가입 서비스(1건)**

(한국투자증권) ※ 소관부서: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

[서비스 주요내용]

고객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채널을 통해 MMW-CMA를 가입하는 경우,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와의 비대면 상호작용 수단(햅틱(진동), 애니메이션, 음성봇(주요내용 낭독), 판매직원 연결 등)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[특례내용] 금융투자업규정 제4-77조 제18호

투자일임 계약 시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며, 비대면 방식은 영상통화에 한해 허용되고 있습니다. MMW-CMA 가입 시 설명의무 이행 과정에서 영상통화 외 비대면 상호작용 수단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금융소비자의 일임형(MMW형) CMA 접근이 용이해지며, 가입까지의 소요시간 단축(대면 또는 영상 약 30분 소요 → 간편가입서비스 15분 내외)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[주요 부가조건]

MMW-CMA의 투자일임채산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~4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(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증권금융회사) 예치금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.

또한, 투자자의 응답 기록 등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, 대기시간 장기화에 따른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품 가입 최종 단계에서 주요 항목에 대해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.

더불어,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상 제시한 투자자와의 상호작용 수단 및 기능*을 모두 포함하여 서비스를 구현해야 합니다.

* 애니메이션, 음성봇(설명 의무 낭독 기능) 및 가독성 높은 레이아웃 사용, 핵심사항에 대해 햅틱(진동)을 이용해 강조, 판매직원 연결 및 미러링 기능(고객의 화면을 직원이 함께 확인) 활용

② 키움증권과 하나카드의 연계를 통한 외화지급결제 및 활용서비스(1건)

(키움증권 및 하나카드) ※ 소관부서: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

[서비스 주요내용]

키움증권 위탁계좌와 하나카드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(외화하나머니)을 연계하여, 고객이 보유한 외화를 증권계좌로 이체해 해외증권 등 투자에 활용하고, 해외증권 매각자금 등 투자수익 또한 증권사 위탁계좌에서 외화하나머니로 재이체를 허용한 서비스입니다.

[특례내용] 외국환거래규정 제2-7조의2

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주식 등 자산 구매 목적 사용이 불가하고, 타인으로부터 양도받는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액을 재화·용역 결제뿐 아니라 증권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신청서비스 이용 고객의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, 소액 외화자산을 활용하여 외화증권 투자시 환전·재환전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.

[주요 부가조건]

동 서비스가 환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‘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외화 환급’ 관련 거래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.

③~⑩ 신용카드회사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 시 판매비중 규제 개선 (8건) ※ 소관부서: 금융위원회 보험과

◇ 대상 기업 : KB국민카드, 롯데카드, 비씨카드, 삼성카드, 신한카드, 우리카드, 하나카드, 현대카드

[서비스 주요내용]

신용카드업자가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,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.

[특례내용]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

신용카드업자가 특정 생·손보사 상품의 판매비중을 50%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음에도 판매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,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50%rule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50%rule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더욱 활성화되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[주요 부가조건]

지정 기업은 사업연동 중 개별 생·손보사 상품 신규모집액은 전체 신규모집액의 75% 이내에서 모집해야 합니다. 다만,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상품은 50% 이내에서 모집해야 합니다.

11 십일번가 전용 적금 서비스(1건) (십일번가(이하 “11번가”) 및 신한은행)

※ 소관부서: 금융위원회 은행과

[서비스 주요내용]

11번가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 상에서 신한은행의 11번가 전용적금 개설을 중개하고, 적금 납입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, 저축에 기반한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하고,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서비스입니다.

[특례내용] ①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

②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1항

①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나, 현행 인가정책상 예금성 상품의 판매대리·중개업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, 11번가가 신한은행의 ‘11번가 전용적금’ 개설을 중개할 수 있도록 등록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또한, ②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의 금융상품 광고를 금지하나, 11번가가 11번가 앱을 통해 ‘11번가 전용적금’ 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동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11번가 앱에서 신한은행 전용 적금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납입내역 및 우대금리 현황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됩니다. 또한, 11번가 이용실적 및 납입실적에 따른 추가 혜택이 제공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[주요 부가조건]

소비자가 계좌개설 과정에서 상품내용 및 계약주체(신한은행)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좌개설 화면을 구성하고, 서비스 미가입자와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서비스 초기 신한은행 제휴계좌의 과도한 쓸림현상 방지 등을 위해 제휴 규모를 제한합니다.

12 엘포인트 회원 대상 APP기반 제휴 통장 개설 간편화한 생활 금융 플랫폼 서비스 (1건) (롯데멤버스 및 전북은행)

※ 소관부서: 금융위원회 은행과

[서비스 주요내용]

엘포인트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전북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여 전북은행은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, 이용자가 엘포인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때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.

[특례내용] ①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

②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1항

③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

①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나, 현행 인가정책상 예금성 상품의 판매대리·중개업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, 롯데멤버스가 전북은행의 제휴계좌 개설을 중개할 수 있도록 등록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또한, ②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의 금융상품 광고를 금지하나, 롯데멤버스가 엘포인트 앱을 통해 제휴 계좌 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더불어, ③롯데멤버스가 2개*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* 롯데멤버스는 신한은행과 제휴하여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진행중(25.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)

[기대 효과]

엘포인트 앱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전북은행 예금통장에 보관하고 그에 따른 금융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[주요 부가조건]

소비자가 계좌개설 과정에서 상품내용 및 계약주체(전북은행)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좌개설 화면을 구성하고, 서비스 미가입자와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서비스 초기 전북은행 제휴계좌의 과도한 쏠림현상 방지 등을 위해 제휴 규모를 제한합니다.

또한, 특정 제휴사 몰아주기 등 이해상충 행위*를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, 서비스 출시 후 반기별로 모집실적 및 수수료(금융회사별)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

* 이용자에게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은행 대신 자사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(중개 수수료 등)을 제공하는 은행을 우선 추천하는 행위 등

13 모니모 우리통장 서비스 (1건)

(삼성카드 및 우리은행) ※ 소관부서: 금융위원회 은행과

[서비스 주요내용]

모니모 앱에서 우리은행 제휴 입출금통장 및 예·적금상품을 중개하며,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우리은행 제휴 입출금통장에 보관하여 우리은행은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, 이용자가 모니모 앱을 통해 결제할 때 제휴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.

[특례내용]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

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1항

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

④ 신용정보법 제11조제1항 및 제6항

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

①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나, 현행 인가정책상 예금성 상품의 판매대리·중개업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, 삼성카드가 제휴 입출금통장 및 제휴 예·적금 개설을 중개할 수 있도록 등록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또한, ②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의 금융상품 광고를 금지하나, 삼성카드가 모니모 앱을 통해 우리은행 제휴 입출금 통장 및 예·적금 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더불어, ③삼성카드가 2개*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* 삼성카드는 국민은행과 제휴하여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진행중(24.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)

한편,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, 여신전문업을 수행 중인 삼성카드가 ④신용정보법과 ⑤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각각 규정하지 않고 있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과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모니모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(모니머니)을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우리은행 입출금통장에 보관하고 그에 따른 금융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[주요 부가조건]

소비자가 계좌개설 과정에서 상품내용 및 계약주체(우리은행)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좌개설 화면을 구성하고, 서비스 미가입자와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서비스 초기 우리은행 제휴계좌의 과도한 쏠림현상 방지 등을 위해 제휴 규모를 제한합니다.

또한, 특정 제휴사 몰아주기 등 이해상충 행위*를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, 서비스 출시 후 반기별로 모집실적 및 수수료(금융회사별)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

* 이용자에게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은행 대신 자사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(중개 수수료 등)을 제공하는 은행을 우선 추천하는 행위 등

<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[1건] >

①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 (1건)

(한국주택금융공사) ※ 소관부서: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

[서비스 개요] ('24.4.3 지정)

실지명의 민간 금융회사는 장기·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,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커버드본드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신용보강을 하여 담보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장기 자금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.

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개정 없이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를 먼저 수행할 수 있도록,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, 제34조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.

[기간연장 수용] ('26.5.27~'28.5.26.)

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비스 출시 이후 '26.2월말까지 7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 2조원의 지급보증을 공급하는 등 운영성과가 확인되고, 은행권의 5년 이상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통해 민간 장기·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